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113 제출연월일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'자격증 발급일'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제1항 본문 중 "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"를 "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안 제27조의2(문화예술교육사) ① 문 제27조의2(문화예술교육사) ① --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 ----- 경력을 갖 추고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 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의 자격을 부여하고, 자격을 부 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 하는 경우 ---. -----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